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의 정부 주도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 신설)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낙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의무자가 구매하도록 하면서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4 신설).
- 목표관리대상자(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보급의무자(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5 및 제12조의16 신설).
-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을 미달한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급대체이행금은 전력 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 보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8 신설).
- 재생에너지센터 등을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는 경우 재생에너지원·발전량 및 발전 기간 등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9 및 제12조의20 신설).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비율을 100분의 80의 범위로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3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목표관리대상자와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보급의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12조의15는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보급목표 준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을 명하고 개선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주체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 시행령에 ①발전사업자의 범위와 ② 의무대상자의 발전설비 규모까지 위임함. 이에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자 및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u>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이하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이하 “ <u>목표관리대상자</u> ”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재생에너지 설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를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¹⁾.

(전문위원 이 세 진)

1) 참고로, 안 제26조제5항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가 규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관련 개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중임(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박정희위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10).